의안 번호	4

제153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
창 원 시 의 회

제153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
의안 번호	4

제의연월일 : 2026. 7. 1.
제 의 자 : 의 장

1. 제의 이유

제5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,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제153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 회기를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함.

3. 참고 자료

o 관계 법령

–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6조

– 「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–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2조

제153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 회기 결정(안)

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2조에 따라 제153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 회기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○ 회 기 : 2026년 7월 1일 ~ 7월 2일 (2일간)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54조(임시회)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· 사무국장 ·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제56조(개회 · 휴회 · 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 · 휴회 ·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

제12조(회기)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,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.

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.

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